붙임 1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사전 문진표

□ 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[○]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1. 2020.8.11.~8.25. 기간 중 본인, 가족, 지인에 대한 해외방문 또는 접촉 이력 확인

1-1. 본인 또는 동거중인 가족이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. 예[ ] 아니오[ ]

1-2.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. 예[ ] 아니오[ ]

2. 2020.8.11.~8.25. 기간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. 예[ ] 아니오[ ]

3. 해열제를 어제 또는 오늘 복용한 적이 있다. 예[ ] 아니오[ ]

4. 2020.8.25. 기준 아래의 증세가 있다.(해당항목 V체크)
□ 발열(37.5℃) □ 기침(인후통) □ 근육통(몸살) □ 호흡곤란 □ 가래 □ 설사

5. 2020.8.11.~8.25. 기간 중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. 예[ ] 아니오[ ]

*1~3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020.8.26.(수) 서울노원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체국택배원 실기·면접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*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제 35조의2(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)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□ 위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응시우체국 : 서울노원우체국
응시번호 : 서울노원-택배원- 응시자성명 : (인)

* 형법 제137조에 따라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